

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2020 - 7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 : 2020. 8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경상남도 ‘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태양광 조성사업’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
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가조 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 및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개요

- 사 업 명 :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
- 사 업 자 : 사단법인 가조면생활체육협의회 대표 임채욱
- 사업기간 : 2020년 8월 ~ 12월(5개월간)
- 발전용량 : 84.66kw
- 사 업 비 : 165,000천원
- 연간수익 : 21,000천원/정도

※ 수익금 사용

: 가조 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우선 집행하여야하며, 추가 이익에 대하여는 체육회법인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또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(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)에 사용

나. 추진사항

- 2019. 9. : 도비 확정
- 2020. 8. : 전기사업허가 추진 중

다. 재산의 표시

위치	면적 (㎡)	설치 (㎡)	설치용량 (kW)	사용허가신청자	비고
가조면 마상리 316-17(주차장)	728	126	24.9	사단법인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1호	
가조면 수월리 453(주차장)	2,242	149	29.88	사단법인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2호	
가조면 수월리 449-13(주차장)	1,835	149	29.88	사단법인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3호	

다. 향후 추진 계획

- 2020. 9. :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(행복농촌과)
 -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철거(원상복구) 비용 예치
- 2020. 8. ~ 9. : 전기발전사업 허가(경제교통과)

3. 관련법규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13조,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
- 『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촉진법』 제26조
- 『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』 제12조 4항

4.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위치 :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16-17(지목 : 주차장)



위치 :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53(지목 : 주차장)



위치 :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49-13(지목 : 주차장)

관 련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
2.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·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

3.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.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.

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"임대"라 한다)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.

<개정 2020. 3. 31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제31조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로부터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
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
□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

제12조(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

④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그 동의 절차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다.